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단3437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 2022. 9.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희승

별지

청 구 원 인

- 채권자는 2011년 12월 26일 별첨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12월 28일 주식회사 D에 금 100,000,000원, 2012년 1월 9일에 금 50,000,000원 등 합계 금 150,000,000원을 2012년 2월 말, 3월 말, 4월 말에 각 금 40,000,000원을 상환하고 5월 말에 금 3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앞의 상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일수에 따라 1일 1/1,000의 이자 (연 36.5%)를 지급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보증채무자 2인 C는 보증채무자 1 B(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경영자라고 소개했고, 현재도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26일 첨부서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 보증채무자 1과 2는 2011년 12월 26일 위 1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제 4조 4항에 2012년 9월 말일까지 자금의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법적 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여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이 되었습니다.
- 그 뒤 2012년 2월 말일부터 주채무자인 D(주)은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는 대여금 및 이자를 단 한 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증채무자 1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보증채무자 2인 C 회장은 채권자가 D(주)에 금 1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보증채무자 1이 120억원 상당의 유치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서류상의 약속으로 보증채무자 1과 보증채무자 2가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6. 2012년 6월경 약속한 대여금 회수가 이행되지 않자 채권자는 다른 연대보증인 E와 함께 부산광역시 남구 F 소재의 보증채무자 1인 B(주)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보증채무자 1과 보증채무자 2는 이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7. 보증채무자 1의 유치권 관련 소송이 오랜 기간 지속 되어 대여금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대여금 회수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채무자 1과 보증채무자 2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는 연 30%,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24%, 2021년 7월 7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자계산서 별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 청구취지를 일부 선회한다.